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의료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됨. (세정 13407-965, 2000. 8. 1)

1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질 의】

저희 회사는 99년 6월 20일에 설립된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 자체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준 농림지역인 전답을 매입하였던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이미 감면을 받았으며, 준 농림지인 전답이 공장을 설립하여 준공 검사를 받으면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목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저희 회사는 벤처 기업으로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에 대해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당해 목적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 한함)한 경우라면 동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임. (세정 13407-966, 2000. 8. 1)